

대학(편)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본 대학의 (편)입학전형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·개선·관리·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성되는 대학(편)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(교무처장) 1인을 포함하여 학생처장, 학과장 및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사무직원으로 간사 1명을 둔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학(편)입시요강(안)의 분석·조사·작성에 관한 사항
2. 대학(편)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
3. 대학(편)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
4. 대학(편)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주요사항 심의(전형유형, 전형자료, 자격기준, 전형일정, 모집인원 결정 등)
5. 신입생 및 편입생 선발규정 및 기타 (편)입학전형에 관한 모든 사항

제4조 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.

제5조 (시행세칙) 본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,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한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대학(편)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본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